

## 건설기술자 행정처분 공고

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등을 위반한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,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4년 4월 9일  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

### 1. 대상자

당사자(건설기술자)		경력(자격)종목	처분내용	처분의 원인사실
성명	생년월일			
최원호	'66.01.15.	건축기사	자격취소	국가기술 자격증 대여
김종민	'87.12.05.	토목산업기사	자격정지 18개월 ('24.05.01.~'25.10.31.)	국가기술 자격증 대여

### 2. 법적근거

-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[별표 18] 등

### 3. 유의사항

-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(송달일)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#### 4. 기타방법

- 위 공고문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(02-2110-6728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